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328호로 2021년 4월 8일 박미영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개정된 상위 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협 의: 관계부서(자치행정과)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2021. 4. 8 ~ 4. 13.):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전으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연혁을 살펴보면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후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되면서 본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변경되어 운영되다가 2015.6.4.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름.

### ○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근거법률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타당한 개정임.
- 안 제2조(구성)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 업무 국장으로 개정하였음.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 지명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있는 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개정임.

- 그 외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는 2008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제명 사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20. 2. 18.>
-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6. 11., 2020. 6. 9.>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